

교육부령 제 호

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

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되도록”을 “되도록 「한국교직원공제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자금의 관리)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(이하 “금융회사”라 한다)에 예치하여야 한다.	제7조(자금의 관리) ①----- ----- ----- ----- 되도록 「한국교직원공제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